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719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민태호

피고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성소영, 이다정, 이희중, 진보승

변론 종결2021. 5. 27.

판결 선고2021. 6.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양도 및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2017. 5. 12.자, 2018. 6. 4.자, 2019. 5. 13.자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 중

162,326,800원 부분을 양도하고,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467,673,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 1) 원고는 2007. 1. 16. B과 혼인하였다가 2011. 1. 26. 이혼하였다.
- 2) 원고는 B을 상대로 'B이 2016. 1. 18. 원고에게 건물을 매도한 대금을 증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0. 24. 'B은 원고에게 4억 3,8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청구지방법원 2016가합22476, 이하 위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 3) 원고는 B을 상대로 'B이 2016. 1.초경 원고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7. 12. 5.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기타(금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5. 21. 'B은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7659, 이하 위 각 채권을 '손해배상 등 채권'이라 한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 1) 피고는 2017. 5. 12.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여신실행일	2017. 5. 12.	여신만료일	2018. 5. 12.
여신(한도)금액	5,000만 원	자금용도	운영자금
여신시행방법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여신실행일	2017. 5. 12.	여신만료일	2018. 5. 12.
상환방법	임의상환방식	여신만료일 이내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여신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2) B은 2017. 5. 12. 제1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대출금 상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같은 날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채권양도계약서]

■ C의 양도채권 표시

1. 양도채권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일 이후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2. 양도금액	2억 원
3. 지급기일	제3채무자의 내규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일
4.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래추가약정서(C용)]

제2조 상환방법 및 건강보험급여비용의 처리

- ① 대출금은 약정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본인('B'을 의미한다)에게서 양도받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약정만료일에 불구하고 상기 건강보험급여비용으로 대출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처리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상환할 대출금이 없거나, 상환처리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은행은 해당 금액을 "여신거래약정서 "에 신고한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신청계좌로 입금하여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3) B은 2018. 6. 4. 제1대출계약의 만기를 '2019. 5. 12.'로 연장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8. 6.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4) B은 2019. 5. 13. 제2대출계약의 만기를 '2020. 5. 12.'로 연장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제3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의 해지 등

피고는 2020. 5. 12. 제3대출계약의 기간만료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채권양수를 포기하고 이를 해지하였고, 2020. 5. 15.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계약 해지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그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 내지 우선 변제를 위하여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수 채권의 추심금을 가액배상해야 한다.

3.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5. 12.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지통지서가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해지일 이후 발생할 이 사건 채권은 B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 중 162,326,800원 부분을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B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 및 손해배상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217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 제13, 14,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장래 변제자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B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무렵 원고에게 약정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 등 채권에 기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각 대출은 그러한 재정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자금 용도로 피고의 대출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약정한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기간 내에 수시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위 대출금을 주로 치과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장래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③ B이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 금액이 2억 원이나¹⁾, 이 사건 각 대출이 한도대출임을 고려하여 그 담보한도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위 금액 전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④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B이 각 대출기간 내에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가 지정한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그 중 대출금 상당액 만큼은 피고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고 충당 후 남은 금액은 B의 예금채권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으로, 대출기간인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B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인 이 사건 채권으로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2019. 7. 5.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3,2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 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김미경

판사김현영

별지

1) 제3채권양도의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이다.